

교회 헌법 개정안

제4조: 회원

제1항 - 회원의 자격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본 헌법의 계약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몇 가지 사례 중 하나를 통하여 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목사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회원 후보자를 예배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회중 앞으로 인도하고 회중의 투표를 걸쳐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 '예배 시간에, 회중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

제5조: 교회의 직분자

제3항 - 집사

A. 선임

교회 회중은 적정수의 집사를 정기회의나 특별회의에서 정규활동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임한다. 집사의 수는 회중의 의사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0-15 가정 당 한 명의 집사를 두도록 한다.

☞ '목사는 집사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집사를 선임한다.'로, '직무 수행자'로, '직분'은 '직무'로 수정

D. 집사의 임기종료

(1)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면으로' 삭제

(2) 집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헌법을 위배한 경우 교회 회중은 정규활동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집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 '비도덕적/비상식적 행위를, 교회 헌법을 위배하거나 주일 오전 및 오후 예배에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경우 목사와 집사회는'으로 수정

제7항 - 직분의 기간

(가) 목사와 집사는 원칙적으로 무기한의 직분이다. 이 외의 다른 직분은 1년을 기한으로 하되 회수에 제한 없이 재임할 수 있다.

☞ '목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무기한이며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마다 의사를 물어 회수에 제한 없이 재임할 수 있다.'로 수정

2012년 현재 교회 내규

3. 집사 선출(전체 항)

교회가 확장되면서 집사를 더 선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초창기 우리 교회의 형편 상 멀리 사는 성도들이 많아 서로를 잘 알지 못하므로 투표로 곧바로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목사와 집사회 혹은 교회 회중이 안수 집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는 2009년도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회를 구성한 대로 목사가 집사 후보를 추천하고 집사회의 동의를 받아 2년 임기로 집사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렇게 임명된 기간제 집사는 임명 기간이 끝나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2년씩 연장된다.

☞ 전체 항 삭제